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98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김의겸 · 김동아 · 김용민
박지원 · 서영교 · 김한규
김남희 · 이성윤 · 박균택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1항 중 “檢察”을 “검사직무”로 한다.

제125조 중 “검찰”을 “검사직무”로 한다.

제126조 중 “검찰”을 “검사직무”로 한다.

제128조 중 “檢察”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24條(不法逮捕, 不法監禁) ①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の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 (생 략)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檢査,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關한 職務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職務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檢査,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關한 職務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職務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	第124條(不法逮捕, 不法監禁) ①- --- 檢査직무-----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 檢査직무----- ----- ----- ----- ----- ----- ----- -----. 제126조(피의사실공표) 檢査직무 ----- ----- ----- ----- -----

(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 -----.
第128條(選舉妨害) 檢察, 警察 또는 軍의 職에 있는 公務員이 法令에 依한 選舉에 關하여 選舉人, 立候補者 또는 立候補者 되려는 者에게 脅迫을 加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選舉의 自由를 妨害한 때에는 10年 以下の 懲役과 5年 以上の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28條(選舉妨害)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u>----- ----- ----- ----- ----- -----.